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각종수수료 징수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 3 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해당 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p> <p>제 4 조(2통이상의 수수료등)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p>	<p>②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중 2개 사항 이상을 일괄하여 청구할 때에는 매 사항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p> <p>제 5 조(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 6 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로서 징수한다. 다만, 학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제 7 조(징수시기 및 반환)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 등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및중·고등학교전·편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종	류	기	준	수	수	료	비	고
<p>(제증명수수료)</p> <p>1. 신원에 관한 사항</p> <p>가. 재직, 경력 및 퇴직에 관한 증명 1통 400</p> <p>나. 연수 및 이수에 관한 증명 1통 400</p> <p>다. 경기입상에 관한 증명 1통 400</p> <p>2. 중·고등학교 학생 제증명에 관한 사항</p> <p>가. 재학증명 1통 300</p> <p>나. 졸업(예정)증명 1통 300</p> <p>다. 수료(예정)증명 1통 300</p> <p>라. 성적(석차연명부포함)증명 1통 300</p> <p>마. 퇴학(제적)증명 1통 300</p> <p>바. 합격(입학)증명 1통 300</p>								

(第12回-文化教育第3次)

종 류	기 준	수 수 료	비 고
사. 휴학(복학)증명	1통	300	
아. 생활기록부(학적부)증명	1통	300	
3. 회계에 관한 사항			
가. 물품납품 및 공사사실등에 관한 증명	1통	600	
나. 원천세 공제에 관한 증명	1통	400	
다. 교육비납입증명	1통	400	
라. 학비감면증명	1통	400	
마. 미확정 채권 양도에 관한 증명	1통	600	
바. 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600	
사. 공유재산에 관한 증명	1통	600	
4. 학원,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증명	1통	600	
5. 기타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증명이외의 수수료)	1통	400	
1. 중학교 입학 및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1건	1,000	
2. 신고 및 신청등에 관한 사항			
가. 법인 설립허가 및 변경 신청	1건	600	
나. 입찰참가신청	1건	600	
다.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600	
라.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	600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가. 문서(그림, 사진, 도면 포함) 및 필름(마이 크로필름 포함) 열람	1건1회	100	
나. 문서(그림, 사진, 도면 포함) 복사	1매	100	

○委員長 李喆鎬 教育廳 關係公務員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風納土城復元區域內未補償部分補償要求에 관한請願의件(金鍾雄議員 紹介)

(11時 08分)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風納土城 復元區域 內 未補償部分 補償要求에 관한 請願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本件을 紹介하신 金鍾雄議員님 나오셔서 趣旨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雄議員 안녕하세요? 松坡區出身 內務委員會 金鍾雄議員입니다.

尊敬하는 李喆鎬 委員長님을 비롯한 文化教育委員 여러분 앞에서 저희 地域住民들의 宿願事業 中の 하나인 風納土城復元에 따른 民願事項에 대하여 그 請願을 紹介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風納土城은 1963年度에 文化財로 指定된 사적 제11호로써 총 길이 2,680m 중에 77년에 446m를 復元하였으며, 254m는 排除하여 현재 住宅이 建立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80m가 未復元되어 있습니다. 현재 未復元된 區域은 93년부터 復元事業이 시작되어 豫算 總 復元費 840餘 億원 中 93年度에 100億원, 94年度에 50億원 來年度에 역시 50億원이 策